

이 사 회 규 정

제 정	1968.09.05				
개 정	1994.07.01	1995.10.01	1998.03.26	1999.04.07	2000.03.11
	2000.11.14	2001.04.10	2001.09.11	2004.10.12	2005.12.09
	2007.09.03	2012.05.15	2012.12.11	2017.03.24	2018.12.20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 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 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의유고 시에는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의 순위에 따라 그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전항의 순위는 대표이사 및 주주총회 의장 유고시에도 준용한다.

제6조(회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②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의2(소집)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의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7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의안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 449조의2 제1항의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정관의 변경

마. 자본의 감소

바.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자.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카.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정관에 의해 상법 제 449조의 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파. 이사의 보수

하.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분기배당의 결정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다.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선임

라. 공동대표의 결정

마.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바.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

사.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아.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자.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차.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카.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타. 분할, 분할합병,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의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상의 타 법인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또는
해외직접투자

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라. 신주의 발행

마.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

바. 준비금의 자본전입

사.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아.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

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차.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카. 자기주식의 소각

4. 기 타

가.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나. 이사의 競業 승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8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마.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되는 사항이 아닌 여타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 집행한다.

제9조(위원회)

- 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후보를 추천한다.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위원회는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2(이사회에의 보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보고받은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0조(이사 아닌 자의 출석)

-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또는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장한다.

제12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8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9년 4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0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1년 4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01년 9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05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07년 9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개정은 본 규정 개정안 시행일 전에 선임된 이사회 의장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